번호			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과 용접·용단 작업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기
2			준 및 업무
			제138회 제2교시 5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
			· 화재위험작업: 용접·용단·금속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, 연삭숫돌 건식연마
			등 불꽃 발생 우려 작업(기준규칙 제236조 제2항)
			· 불티 비산·가연성물질 착화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큼
			· 사업주는 제241조 준수사항 이행, 용접·용단 시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
			배치 필요
			2.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(제241조)
			· 통풍·환기 불충분 장소에서 환기용 산소 사용 금지(제1항)
			·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(제2항 제1호)
			·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·보관 현황 파악(제2호)
			·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(제3호)
			· 비산방지덮개·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, 방화포는 소방시설법 제40조
			제1항 성능인증품 사용(제4호)
			· 인화성 액체 증기·인화성 가스 잔류 방지 환기 등 조치(제5호)
			· 작업근로자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(제6호)
			· 작업 시작 전 제2항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(제3항)
			· 작업내용·작업일시·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서면 게시, 상시·반복 작업은 생
			략 가능(제4항)

번호			3. 화재감시자 배치기준(제241조의2 제1항)
2			·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(개구부 등 개방 부분 포함)에
			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
			·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
			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
			·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·벽·천장·지붕 반대쪽 면에 인접해 열전도·열복사
			로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
			· 예외: 같은 장소 상시·반복 작업 + 경보용 설비·기구, 소화설비 또는 소화
			기 구비 시 배치 생략 가능
			4. 화재감시자 업무(제241조의2 제2항)
			· 제1항 각 호 장소의 가연성물질 유무 확인
			· 제232조 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작동 여부 확인
			·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 유도
			5. 지급 장비(제241조의2 제3항)
			· 확성기
			· 휴대용 조명기구
			· 화재 대피용 마스크(한국산업표준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 충
			족품) 등 대피용 방연장비
			6. 현장 운영 시 관리 방안(학습용 정리)
			· 작업 전: 가연성물질 제거·격리, 배관·용기 내 인화성 물질 제거(제240조),
			가스농도 측정

번호			· 작업 중: 화재감시자는 감시 업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작업과 겸하지 않게
2			운영
			· 작업 후: 불씨 잔류 여부 확인 후 종료, 서면 게시 내용에 점검 결과 기록
			· 교육: 소화기 사용·대피 경로를 작업 전 안전교육에 포함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